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04호 2013. 9. 6(금)

<b>규 칙</b>	
○ 사천시 규칙 제539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.....	2
<b>고 시</b>	
○ 사천시 고시 제2013-123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.....	7
○ 사천시 고시 제2013-143호 하천점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.....	9
○ 사천시 고시 제2013-144호 하천점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.....	10
○ 사천시 고시 제2013-14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.....	11
○ 사천시 고시 제2013-150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.....	13
<b>공 고</b>	
○ 사천시 공고 제2013-356호 201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.....	14

21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2)

## 규 칙

### 사천시 규칙 제539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7월 19일

사 천 시 장 정 만 규

###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총칙)” 을 “(통칙)” 으로 한다.

제1조, 제46조제2항, 제79조제3항, 제161조, 제162조, 제163조, 제164조 중 “의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5항, 제43조제1항, 제64조제1항 중 “자는” 를 “사람은” 으로 각각 한다.

제3조제1항, 제20조제3항, 제22조제2항, 제23조제1항, 제27조제1항, 제41조제3항, 제51조제4항, 제52조제5항, 제65조, 제67조제4항, 제89조제1항, 제99조제1항, 제108조제2항, 제120조제2항, 제137조의2제2항, 제141조, 제144조제2항, 제150조제1항, 제151조제1항제1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각각 하고, 제3조제1항제1호 “경리업무담당자” 를 “경리업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3)

무담당자·지출담당자 및 회계 업무담당자” 로 한다.

제3조제4항, 제10조제1항, 제21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2항, 제37조의2제1항, 제38조, 제45조제2항, 제47조제2항, 제71조, 제73조, 제75조, 제84조, 제85조제1항, 제102조, 제111조, 제113조제2항, 제114조, 제116조제1항, 제118조제2항, 제121조제2항, 제137조의2제2항, 제141조, 제149조1항, 제150조제2항, 제152조제4항, 제154조제1항, 제156조제1호, 같은 조 제2호, 같은 조 제3호, 제159조제1항, 제163조, 제164조 중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각각 한다.

제3조제4항, 제65조, 제77조제1항 중 “자가” 를 “사람이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(500만원)” 을 “(지방세 500만원)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5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2호, 제9조제2항제8호, 제12조제2항제11호,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, 제18조제3항, 제24조제1항제2호, 제35조제3호, 제60조제2항, 제89조제1항, 제112조제1항제6호, 제135조제1항, 제156조제4호, 제157조, 제161조, 제165조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각각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이에 준용한다” 를 “준용한다” 로 한다.

제5조제3항, 제27조제2항, 제52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5항, 제64조제3항, 제99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제121조제3항, 제137조제1항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각각 한다.

제10조제2항, 제18조제1항, 제27조제2항, 제45조제1항, 제59조제1항, 제60조제1항, 제68조제1항, 제7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, 제77조제1항, 제84조, 제91조제1항, 제100조, 제135조제3항, 제137조의2제2항, 제152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, 제153조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각각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4)

제10조제1항 중 “하고자 하는” 을 “하는” 으로 한다.

제14조, 제15조제1항, 제24조제1항제3호 중 “인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각각 한다.

제1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33조 중 “의 규정에 준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 각각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변경으로 인하여” 를 “변경으로” 로 한다.

제23조제1항, 제70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각각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종료후” 를 “종료 후” 로 한다.

제30조제3항, 제68조제1항, 제85조제1항, 제141조, 제150조제2항, 제163조, 제165조 중 “행정안전부 장관” 을 “안전행정부 장관” 으로 각각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59조제4항에 따라 ” 로 한다.

제33조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“같은법” 을 “같은 법” 으로 하고, “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법시행규칙」 및 「시세부과징수규칙」 이 정하는바에 의한다” 를 “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및 「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제50조제2항 중 “의한 적법여부” 를 “따르는지” 로, 같은 법 제3항 중 “공무원여비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, 업무추진비 중” 을 “공무원여비, 운영수당 중 일·숙직비, 업무추진비 중” 으로 한다.

제50조의2제1항 중 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.” 를 “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5)

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” 로 한다.

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” 를 “출납원의 지급통지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다만,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.” 를 “다만, 통신 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.” 로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전송” 을 “송부” 로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, 지급계좌번호” 를 “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, 지급계좌” 로 같은 항 제3호 중 “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, 지출금액, 지급계좌번호,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” 을 “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, 지출금액, 지급계좌, 전화번호 등 입력” 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, 제64조제3항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각각 한다.

제52조제2항 중 “의하여야” 를 “따라야” 로 한다.

제55조제2항, 제3항 중 “2” 를 “둘” 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자에” 를 “사람에” 로 한다.

제71조 중 “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” 를 “각 호에 대하여” 로, 같은 법 제3호 “자와의” 를 “사람과의” 로 한다.

제76조제3항 중 “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64호 서식을 구분하여 정리한다.” 를 “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(별지 제64호서식)를 정리한다.” 로 한다.

제76조제5항 중 “출납원 명의의” 를 “지방자치단체 명의의” 로 한다.

제77조제2항 중 “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” 를 “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의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” 로, 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.” 를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6)

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.” 로 한다.

제79조제1항, 제90조, 제97조, 제13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” 를 “사람으로” 로 각각 한다.

제79조제2항 중 “자에게” 를 “사람에게” 로 한다.

제90조 중 “기타 사고로 말미암아” 를 “그 밖의 사고로 ” 로 한다.

제97조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91조제1항 중 “2통을” 를 “2부를” 로, “1통을” 를 “1부는” 로 한다.

제93조, 제106조제1항 중 “기타에” 를 “그 밖에” 로 각각 한다.

제99조제2항, 제100조, 제129조제4항 중 “내지” 를 “부터” 로 각각 하고, 제99조제2항 “에서는” 을 “까지는” 로 한다.

제111조 중 “의 규정에 준한다” 를 “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제121조제3항 중 “행정안전부 예규” 를 “안전행정부 예규” 로 한다.

제129조제4항 중 “과목 개정은” 를 “ 과목 경정은” 으로, “에서” 를 “까지” 로 한다.

제149조제2항 “의 규정에 의하여야” 를 “에 따라야” 로,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“전엽에서 이월” 을 “전 옆에서 이월” 로 한다.

제152조제3항, 제153조제1항, 제2항 중, “의거” 를 “따라” 로 각각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7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3-123호

###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제59조,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함.

2013년 7월 24일

사 천 시 장

1. 사 업 명 : 굴포지구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
2. 사업목적 : 주민공동활동(제조,가공)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증대
3. 위 치 :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굴포마을 일원
4. 사업 시행 면적 : 건축연면적:362.49㎡  
(저온저장고:200.6㎡, 공동작업장:161.9㎡)
5. 주요사업내용
  - 소득기반시설확충사업
    - 참다래공동작업장 1동(12.55mx12.9m)
    - 저온저장시설 1동(15.55mx12.9m)
  - 지역역량강화사업
    - 교육훈련, 마을홍보, 부대비용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8)

6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7. 사 업 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국 비	지방비	자부담	비고
계	380	224	96	60	
소득기반시설확충사업	300	168	72	60	
지역역량강화사업	80	56	24	-	

8. 사업기간 : 2013.06. ~ 2014.12.(2개년)

9. 수용할토지 및 사용명세서

토지소재	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 고 (소유권외권리자)
읍·면	동·리						
서포면	내구리	418-11	답	3,012	760	김구인	

10. 열람장소 : 사천시 건설과 (055-831-3276)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9)

사천시 고시 제2013-143호

## 고 시 문

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일

## 사 천 시 장

점 용 자	성 명	공군제3훈련비행단장	주 소	사천시 사천읍 수석동 사서함 336-13호
하 천 명	중선포천(지방하천)			
점용개요	위 치	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일원		
	면 적	중선포천 11,408m <sup>2</sup> (영구:2,600m <sup>2</sup> , 임시:8,808m <sup>2</sup> )		
	기 간	· 점용기간 : 영구(비행기 유도등 해상점검로) (가축도 공사 후 원상복구, 공사용가도 조건부 영구 존치) · 공사기간 기 정 : 2012.03.17 ~ 2013.05.30 변 경 : 2012.03.17 ~ 2014.12.01		
	목 적 및 개 요	비행기 유도등 해상점검로 설치 L=410m 토석운반용 가도 1식(A=8,808m <sup>2</sup> )		
열람서류 :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(건설과 비치)		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0)

사천시 고시 제2013-144호

## 고 시 문

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일

## 사 천 시 장

점 용 자	성 명	남해식품 대표이사 양 재 문	주 소	사천시 송포동 1044-1
하 천 명	송포천(지방하천)			
점용개요	위 치	사천시 송포동 1509-2번지		
	면 적	공사중 일시점용 8.01m <sup>2</sup> 공작물 설치점용 2.98m <sup>2</sup>		
	기 간	· 점용기간 : 2013.08.28 ~ 2018.08.27(5년간) · 공사기간 : 2013.08.28 ~ 2013.09.26(30일간)		
	목 적 및 개 요	하수관로 매설하여 차집맨홀에 연결		
열람서류 :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(건설과 비치)		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1)

사천시 고시 제2013-145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28일

#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신고수리번호(일자) : 제2013-2호(2013. 6. 19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  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  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 
- 700㎡  
〔PE 부잔교(L=30m, B=4.1m), 도교(L=14m, B=1.2m)〕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20-11번지선 공유수면(구우진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착·준공(예정)일
  - 공사기간 : 2013. 6. 20. ~ 2013. 7. 8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: 2013. 8. 28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2)

## 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조건

- 점용·사용 신고수리 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실시계획승인신고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신고수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3)

사천시 고시 제150호

##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림 가마등지구, 사등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9월 일

사 천 시 장

1.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: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 사천시지사
2. 사업지구 명칭 : 동림 가마등지구, 사등동지구
3. 사업위치 및 면적 : 동림동 180-3번지, 사등동 42-1번지 일원 109천㎡
4. 대행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
5. 기타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4)

## 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3-356호

### 201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

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29조2에 따라 2012년도 재난관리 실태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3년 5월 일

## 사 천 시 장

- 기 간 : 2012. 1. 1 ~ 12. 31(1년)
- 재해발생 및 수습현황
  - '12. 4.3 강풍시
    - 피해사항 : 사유시설 21건 118,176천원
    - ⇒ 재난지원금 12건 49,000천원 지급
  - '12.7.17 태풍 “카눈” 시
    - 피해사항 : 사유시설 1건 29,000천원
  - '12. 8.25 태풍 “볼라벤” 시
    - 피해사항 : 사유시설 1,130건 276,661천원
    - ⇒ 재난지원금 122건 534,000천원 지급
  - '12. 9.15 태풍 “산바” 시
    - 피해사항 : 인명피해 : 이재민 57세대 142명 / 부상 3명
    - 사유시설 142개소 279,113천원
    - 공공시설 108개소 4,329,896천원
    - ⇒ 재난지원금(사유142건 286,000천원/공공108건11,337,534천원)지급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5)

- '12.12.28 강설 시
  - 피해사항 : 사유시설 8개소 80천원
  - ⇒ 재난지원금 4건 13,000천원 지급
  
- 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및 대응역량 강화
  - 재해 예·경보시설 현황
    - 자동우량경보시설 : 1개소(와룡산 백천지구)
    - 재해문자 전광판 : 6개소(용소, 남일대, 백천계곡, 다솔사, 수청마을, 팔포)
    - 자동우량관측 장비 : 11개소
    - 자동기상 관측시스템(AWS)설치 : 6개소
    - 수위관측시설 : 2개소(대진교, 사천교)
    - CCTV : 5개소(동계, 가화, 삼천포한내, 당천마을, 가산교)
  - 재난대응 훈련
    - 안전한국훈련 : '12. 4.25 ~ 4. 27
    - NDMS이용 도상훈련 : '12. 7. 20 ~ 8. 3
    - 지진해일 현장훈련 : '12. 5. 24(동서금동 서금매립지)
    - 지진 및 지진해일 도상훈련 : '12. 4. 26
  
-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
  -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행사 실시 : 10회
  - 각종 안전홍보물 제작 배포 : 10종 50,000부
  - 시민안전봉사대 재난위험시설 현장점검 참여 : 4회
  -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실시 : 16회
  -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: 365세대
  -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현장 CP 설치·운영 : 7.1 ~ 8.31(2개월간)
  -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운영 (전담요원 3명 교대근무)
  -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: 390개(시설물 40, 건축물350)

# 사 천 시 공 보

제304호(16)

재해예방사업현황

연번	사 업 명	사업비(백만원)
<b>계</b>		<b>7,953</b>
1	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2,763
2	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3,163
3	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900
4	노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243
5	읍면동지역 재해위험지 정비사업(12건)	250
6	재난사전대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(15건)	340
7	곤양 본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	175
8	정동 대산 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	119

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

(단위:천원/ 2013.1.31일현재)

적 립 내 역				지 출 액	보 유 액
계	시출연금 등	이자수입	이 월 액		
1,950,632	737,000	38,190	1,175,442	865,341	1,085,291